

수의계소식



중앙회소식

»» 수의사도 의료용(인체용)마약류약품 취급가능

수의사도 동물진료를 위해 동물용과 인의용 구별 없이 모든 마약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마약류약품의 유출 등을 우려하여 수의사의 의료용(인체용)마약류약품 사용을 금하는 유권해석을 내려왔으나 우리회의 지속적인 논리개발과 설득, 견의로 2009년 9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의사도 의료용(인체용)마약류약품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자세한 내용은 870페이지 홍보자료 참조).

»» 신종플루 예방관련 긴급조치 안내

우리회 정영채 회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주재한 신종플루예방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하여 만든 행안부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소개하면서 하반기에 계획된 축산관련 단체들의 각종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각 단체장들은 축산분야의 특성상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국민보건과 축산업계의 피해가 클 것을 염려하여 정부 지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국가 재난경보 경계단계가 발령 중이다.

◎ 취소된 행사들

-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2009년 FOOD EXPO(2009.10.15~18)” 취소
- 전국한우협회 주최 “창립10주년 기념식 및 한우인의 날(2009.9.15~16)” 취소
- 대한양계협회 주최 “2009 전국양계인대회(2009.9.18)” 취소
- 대한수의사회 주최 “수의사의 날(2009.10.31)” 취소

»» 제25차 수의정책포럼에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제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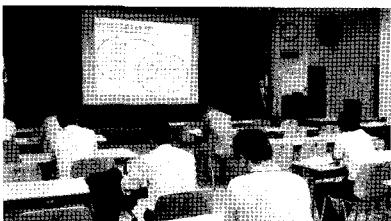


지난 9월 4일(금) 오전 7시부터 약2시간동안 제25차 한국수의정책포럼(상임대표:이문한, 공동대표:곽형근, 박용호, 배상호, 이주호, 장기윤, 정영채)이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조찬과 함께한 이번 정기포럼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의 “식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어서 수의사처방제 등 수의계현안에 대한 건의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의견조정회의

우리회에서는 지난 8월 24일(월)에 열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의견조정회의에 이어 9월 10일(목)에 두 번째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애완동물관련 단체를 제외한 소비자 측인 우리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가하였으며 애견의 폐사 및 질병시 교환 및 환불 기준일을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12일로 최종 조정하는 의견을 냈다. 이 의견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애견분양관련단체와 다시 회의를 하여 최종안을 낼 예정이다. 애견분양관련단체에서는 교환 및 환불 기준일을 5일이나 7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제2차 HACCP 경영자교육



우리회에서는 지난 9월 8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영업자 및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에 의하여 제2차 HACCP 경영자교육을 수의과학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교육 대상은 HACCP 지정을 받은 업체 및 농가의 영업자, 농업인 등 이었으며 2009년도 축산물위생관리방향 및 고시해설, 가축방역과 위생, 그리고 HACCP 지정 및 정기심사 요령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제2차 임상수의사 HACCP(소 분야) 전문과정

우리회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와 관련하여 제2차 임상수의사 HACCP(소 분야) 전문과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09.10.10(토)~11(일)
- 장소 : 수의과학회관 5층 시청각 강당
- 대상 : HACCP(소 분야)에 관심 있는 임상수의사

수의계소식



지부 및 산하단체 소식

》》경기도지부, 임상수의사 연수교육 안내

경기도수의사회(회장 : 백충기)에서는 2009년도 제4차(9.27.일), 제5차(10.11.일)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을 각각 고양시청 문예회관과 경기도수의사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교육 일정 ●

구 분	내 용	비 고
09:30~10:00	등록 및 만남의 시간	
10:00~11:50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청 곽병태 사무관)	
11:50~13:00	중식	
13:00~13:50	불황을 극복하는 창조적 경영마인드와 지속학습 (경기도수의사회 회장 백충기)	
14:00~14:50	Clinical overview of canine vomiting (경북대학교 내과 오태호 교수)	
15:00~15:50	새로운 개념의 항구토제 세레나이아(maropitant citrate) (화이자동물약품 최원준 팀장)	

이번 연수교육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강의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새롭게 우리 임상수의사들이 사용할 마약류약품관리에 관한 이해를 돋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기타문의 및 신청 : 경기도수의사회(031-242-0258, ggkvma@yahoo.co.kr)

»» 한국동물병원협회·한국임상수의학회·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안내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이승근)·한국임상수의학회(회장:이효종)·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회장:김용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동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교육 일정 ●

행사명		2009년도 한국동물병원협회·한국임상수의학회·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일시	2009년 10월 17일(토) ~ 10월 18일(일) 2일간	
장소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강의동 83동	
규모	임상수의사 및 교수 포함 약 1,000명	
강사	국내강사 다수	
주최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후원	대한수의사회, 일본소동물수의사회, 세계소동물수의사회	

기타문의 및 신청 : 한국동물병원협회(02-522-4722, www.kaaha.or.kr)



입법예고 및 법령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

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713호)

- 시행일 : 공포일(2009년 9월 3일)부터
- 주요내용 등 : 생계안정비용 지원대상 조정
 - 제12조제1항내용 추가 : 생계안정비용지원 해당 항목 선정(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라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자에 대한 내용추가 :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고도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하는 가축부터 적용한다. 대체수